

국가생명윤리정책원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 성료

- 보건복지행정타운(중곡동) 내 공공기관장 전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
릴레이 참여 -

□ 국가생명윤리정책원(원장 홍창권)은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

*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’임

□ 이번 캠페인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참여문화를 조성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 지난 5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을 시작으로 △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 △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 △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 △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현주 원장 △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까지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모든 공공기관장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였다. (※기관명 작성일 순)

○ ‘연명의료결정제도’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*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,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·등록할 수 있다.

* (연명의료)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

□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빠르게 발전해 왔고, 제도 시행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2백만을 돌파하여 6월 현재 240만 명이 작성했다.

□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1:1 상담을 받아야 한다.

○ 현재 지역보건의료기관(보건소)과 의료기관, 비영리법인, 노인복지관,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745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,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(대표번호 1855-0075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: (누리집 주소) www.lst.go.kr

□ **홍창권** 원장은 “초고령 사회를 앞둔 현재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,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.”라며, “선택은 개개인의 몫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국가생명윤리정책원(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)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‘제2차 호스피스·연명의료 종합계획(2024~2028)’에 따라 국민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향상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	책 임 자	센 터 장	조정숙 (02-778-7505)
		담 당 자	선임팀장	문용준 (02-778-7001)
			홍보팀장	김미리 (02-737-8310)

참고1

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주요용어

□ 제도 개요

- (법률)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'16.2월 제정, '18.2월 시행)
- (사업수행기관)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*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정
- (제도참여기관)
 - (의료기관)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**441개소**('24. 5월말)
* 자체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 참여 위해 12개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·운영
 - (등록기관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**745개소**('24. 5월말)
* 보건소, 의료기관, 비영리법인·단체, 공공기관, 노인복지관

<주요 용어>

- ☞ (연명의료)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 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
- ☞ (연명의료중단등결정)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
 - 의사 2인의 임종과정 판단 + 환자 의사 확인(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, ②연명의료계획서, ③가족 2인 진술) * 환자 의사 확인 불가 시 ④가족 전원합의
- ☞ (사전연명의료의향서)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
- ☞ (연명의료계획서)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
- ☞ (말기환자)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(통상 3~6개월)
- ☞ (임종과정)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,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(통상 2~3일)

참고2

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운영 현황('24. 5월말)

□ 제도 참여기관

- (의료기관) 총 441개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* 운영 또는 공동윤리위원회 위탁

* (의료기관윤리위원회)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5인 이내로 구성·설치되어 제도와 관련 심의, 상담, 교육 등 수행

종별	구분	대상기관 수	설치·등록기관 수	등록률(%)
	상급종합병원	47	47	100.0
	종합병원	329	204	62.0
	병원	1,403	39	2.8
	요양병원	1,392	143	10.3
	합계	3,171	433	13.7

*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(호스피스 전문기관) 8개 기관 등록

- (등록기관) 총 745개소 지정

구분	지역보건 의료기관	의료기관	비영리 법인/단체	공공기관	노인복지관	계
기관수	169	200	34	2(239*)	101	506(745*)

* 239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/지사/출장소 포함

□ 제도 운영 현황

